체육인 복지법안 (이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3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이 용·안병길·태영호

윤재옥 • 양금희 • 서정숙

조수진 · 김승수 · 유의동

조경태 · 김석기 · 박성중

김상훈 · 정진석 · 윤한홍

성일종 · 김태흠 · 김도읍

신워식 · 주호영 · 박덕흠

권명호 · 이주환 · 김예지

이종배 · 추경호 · 김정재

지성호 • 구자근 • 권성동

최승재 • 서일준 • 배현진

배준영 · 최춘식 · 한무경

홍문표 • 정동만 • 김성원

정희용 · 엄태영 · 유경준

의원(42인)

제안이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국가대표를 비롯한 체육인들이 열 악한 여건 가운데 십수 년간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흘린 땀과 눈물 로 이뤄낸 값비싼 결과물임.

하지만 국위를 선양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의 은퇴

이후 준비나 대책이 전무하여 은퇴 후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현재 운동선수들의 운동 기피현상까지 촉진시키고 있음.

뿐만 아니라 비인기종목의 경우 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 확대를 유도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 복지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5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보상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 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이 법에서 정한 복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09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조정되어야 할 것임.

체육인 복지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고 국가 체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 또는 선수이었던
 사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에 등록된 심판 또는 등록되었던 심판
 - 2.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를 말한 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체육인의 복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등

-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위선양 및 국가 체육 발 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체육인이 국위선양 및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체 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종목 체육인이 체육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

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 정도, 비인기종목 선수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3장 체육인의 지원 등

- 제7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거나 중증질환을 얻게 된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한다.
 - ② 국가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인정, 부상등급의 결정 및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로금, 연금 등(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 3.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보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심사·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관련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3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및 그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 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장애연금 및 장학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복지후생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정지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보험 가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동경기대회를 개최· 운영하는 자는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이하 "학생선수"라 한다)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학생선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강화훈련 및 운동경기대회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학생선수의 범위, 보험 및 공제의 종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장학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선수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에 종사하거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특별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위선양과 지역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특별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 보조 대상자 선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체육인의 진로 및 창업 지원) ① 국가는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일자 리 알선, 창업 지원 등의 사회참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 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체육인복지서비스 지원 및 전담기관 지정

- 제14조(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의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 지원, 인재양성, 교육 등 관련 업무에 전문 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2.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체육인복지 및 진로 지원 사업
 - 2. 체육인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사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공제 사업(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
 - 4. 체육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5. 그 밖에 체육인복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6. 그 밖에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7조(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재원 등)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3. 그 밖의 수익금

- ② 정부는 전담기관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 제18조(보상의 정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 거나 알선하는 행위
 -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받을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9조(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 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이 법 적용 대상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 관계증명, 건강보험, 범죄경력, 전과기록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 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및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1. 제7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보상 및 취소
 - 2.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 3. 제9조에 따른 보험 가입 등

- 4. 제10조에 따른 장학사업
- 5. 제11조에 따른 의료비 등 보조
- 6. 제1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 7. 제19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의 환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 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